

e-Postbank예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e-Postbank예금’(이하 ‘이 예금’ 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 및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’, ‘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’, ‘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’,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

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- ①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예금의 가입 및 e-Postbank예금으로의 전환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 시 다른 출금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·스마트뱅킹 약정은 존속되나, 출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·스마트뱅킹 약정도 해지된다.

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1원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 【적용이율】

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
② 우대이율은 매 결산기간 마다 이 예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.5%p를 제공한다.

1. 이 예금 결산기 평균잔액 50만원 이상 : 연 0.2%p

2.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 시 : 연 0.1%p

※ 급여이체 기준은 『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』 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

-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(±3영업일)에 있는 경우

-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
-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

3. 우체국 스마트뱅킹 이체, 출금 거래실적이 있는 경

우 : 연 0.1%p

4.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20만원 이상인 경우 :
연 0.1%p

※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
(신용결제 제외)

- ③ e-Postbank예금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저축예금 이자율로 변경된다.
-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밟음한다.

제8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(결산일)은 매년 3, 6, 9, 12월 첫째 토요일로 한다.
- ② 이자 계산기간(결산기간)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)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제9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(지급일)에

통장으로 입금된다.

제10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은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epostbank.kr)에 게시한다.

제11조 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제12조 【기타】

-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, 상계가 가능하다.
- ② 이 예금은 전자통장 약정, 양도,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.
- ③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, 모든 입금 및 지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채널(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 등)을 이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.
- ④ 다만, 고객이 요청하거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금융채널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창구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카드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무통장 출금이 가능

하다.

- ⑤ 저축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한 예금주는 저축예금으로 재전환할 수 있으나 다시 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. 또한, 이 예금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이 예금에 신규 가입한 예금주는 저축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